

No. 45098*

**Switzerland
and
Republic of Korea**

Agreement between the Swiss Federal Council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Zurich, 6 May 2008

Entry into force: *26 May 2008 by no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Authentic texts: *English, French and Korean*

Registration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Switzerland, 8 July 2008*

**Suisse
et
République de Corée**

Accord entre le Conseil fédéral suisse et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relatif à la coopération scientifique et technologique. Zurich, 6 mai 2008

Entrée en vigueur : *26 mai 2008 par notification, conformément à l'article 9*

Textes authentiques : *anglais, français et coréen*

Enregistrement auprès du Secrétariat des Nations Unies : *Suisse, 8 juillet 2008*

* *The texts reproduced below are the original texts of the agreement as submitted. For ease of reference, they were sequentially paginated. The relevant Treaty Series volume will be published in due course.*

Les textes reproduit ci-dessous sont les textes authentiques de l'accord tel que soumises pour l'enregistrement. Pour référence, ils ont été présentés sous forme de la pagination consécutive. Le volume correspondant du Recueil des Traités sera disponible en temps utile.

[KOREAN TEXT – TEXTE CORÉEN]

스위스 연방각의와 대한민국 정부 (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하기를 희망하여,

과학 및 기술관계 발전이 양국에 호혜적 이익을 가져올 것임을 인식하며,

생산적 제휴의 창조를 통하여 과학 및 기술협력의 영역을 확대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당사자들은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두 나라의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의 발전을 증진시키고, 양국의 과학자와 전문가의 경험과 유용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협력이 바람직한 다양한 분야를 상호 합의 하에 지정한다.

제 2 조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각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국내법을 수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체결한 여타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 하에서 협력 활동은 다음 각 목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상호 다양한 관심 분야에 관한 회의

나. 과학 및 기술 정보와 자료의 교환

다. 과학자·기술자 또는 그 밖의 과학기술분야 전문가의 교환 및 방문

라. 산업분야에 그 연구결과를 적용시킬 수 있는 공동연구과제/ 프로그램의 수립 및 이행, 그로부터 발생하는 경험 및 지식의 교환

마. 호혜주의에 기초한 지원협력에 의한 젊은 과학자들의 훈련 촉진

바. 실질적 또는 실제적 공동연구소의 설치 또는 지원

사. 양 당사자에 의하여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 3 조

1.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양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에 정부기관·대학교·연구소 및 양국의 그 밖의 기관과 기업 간의 직접적인 접촉 및 협력의 발전과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의 이행을 위한 그들 간의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하며 촉진한다.

2.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착수는 되었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양 당사자 간 과학 및 기술분야의 협력 활동은 발효일부터 이 협정 하에 편입된다.

제 4 조

1. 이 협정의 목표는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협력 프로그램의 이행을 통하여 실현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재정조건 및 부대조건을 포함한 협력의 범위, 영역, 그리고 형태를 명시한다.

2. 이 협정의 이행 책임은 스위스의 경우에 스위스 연방내무부의 국가교육연구처, 대한민국의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에 있다.

제 5 조

1.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양 당사자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가.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의 교환

나. 이 협정에 의한 협력 활동과 수행의 재고 및 논의

다.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하여 양 당사자에게 자문 제공

2. 공동위원회는 상호 합의된 날짜에 한국과 스위스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 6 조

이 협정 하에서 협력 활동으로부터 도출된 과학기술 정보는 타방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상업적 또는 산업적 목적을 위하여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공개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한다.